

	산학공동기술개발센터 규정	제 정 일	2022. 3. 1
		개 정 일	2022.10. 1
		개정차수	1차
		담당부서	산학공동기술개발센터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 센터는 동서울대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 산학공동기술개발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라 한다.

제 2조 (위치) 센터는 본교 내에 둔다.

제 3조 (목적) 센터는 각종 학술연구 단체와 산업체와의 긴밀한 협동을 통하여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기술의 이론과 응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본교 내의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고 산학협동연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본교의 교육과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 (사업) 센터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산업기술 발전에 필요한 기초 과학 기술연구
2. 산업기술 개발과 활용을 위한 연구
3. 관련 연구 기관과의 학술정보의 교환 및 산업체와의 기술 협력
4. 국가기관 및 외부로부터 위탁한 과제 연구
5. 연구원의 학술활동 지원 및 연구 업적 기록과 관리
6. 산학공동기술개발 과제 기획 및 관리
7. 기술지도 및 애로기술 지도 자문 운영 및 관리
8. 기타 본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 2 장 조 직

제 5조 (센터장) ① 센터의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10. 1)

② 센터장은 본 센터를 대표하며 일체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 6조 (연구원) 센터의 연구 활동과 연구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원을 둘 수 있다.

1. 전임연구원 : 본 센터에 소속되어 연구 업무를 전담하는 연구원
2. 겸임연구원 : 본교의 교원으로 센터의 연구를 겸임하는 연구원
3. 특별연구원 : 타 기관의 연구원을 센터의 연구원으로 위촉하여 연구를 겸임하게 하는 연구원
4. 기타 연구 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

제 7조 (직원) 센터의 사무 및 회계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

제 8조 (운영위원회) ①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센터장을 포함한 10인 내외로 구성하며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전임 교원, 겸임교원, 산업체인사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 ③ 위원장은 회무를 정리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회의준비,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둘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운영방침
 2. 센터의 사업계획 및 예·결산
 3. 센터 운영결과 평가 및 개선방향 설정
 4. 기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⑥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위원회 산하에 심의사항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3 장 재 정

- 제 9조 (세입) 센터의 세입은 정부기관 및 공공단체에서 지원하는 과제 연구비, 산업체로부터의 용역 연구 개발비 및 기타 기술지원료, 간접비,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 제10조 (세출) 본 센터의 세출은 연구비, 대외 교류 및 홍보비, 기타 센터 운영 경비로 구분하며 그 집행은 센터 운영세칙에 따른다.
- 제11조 (간접비 공제) 센터 운영기금의 확보를 위하여 센터를 경유하여 지원(수행)되는 모든 교내외 연구 지원금에 대해서 센터 운영 세칙에 따라 일정한 율의 간접비(수수료)를 공제할 수 있다.
- 제12조 (시행세칙)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한 시행세칙에 의하여 시행한다.

제 4 장 연구장려금(인센티브)

- 제13조 (적용범위) 본교 소속 교직원이 교외 위·수탁 연구를 본교를 통하여 수행한 결과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14조 (용어의 정의) “연구장려금”이라 함은 간접비 입금액 중 일부를 연구 장려를 위하여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 제15조 (재원) 연구장려금의 지급재원은 간접비 입금액으로 한다.
- 제16조 (산정기준) 연구장려금 지급 기준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장려금 지급 기준

구 분	판 정 기 준	비 고
A 급	당해연도 간접비 수입이 2천만원 이상	
B 급	당해연도 간접비 수입이 1천만원 이상	
C 급	당해연도 간접비 수입이 1천만원 미만	

- 2. 연구장려금 지급 내용

구 분	지 급 내 용	비 고
A 급	간접비 수입의 40%	
B 급	간접비 수입의 30%	
C 급	간접비 수입의 20%	

3. 제안서 작성 장려금 지급 기준은 우리대학 산학협력단이 주관기관인 경우만 해당하며, 지급내용은 제안서 총 사업비 기준으로 한다.

제안서 총 사업비	작성 장려금	비 고
1,000만원 미만	5만원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10만원	
5,000만원 이상	25만원	

4. 제안서 작성 장려금은 제안서 제출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센터에 제출 시 지원한다.

제17조 (지급시기) ① 연구장려금의 지급은 산학협력단 회계종료 전 지급 기준 및 내용에 맞게 일괄 지급한다.

② 제안서 작성 장려금은 제안서 제출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확인 후 지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